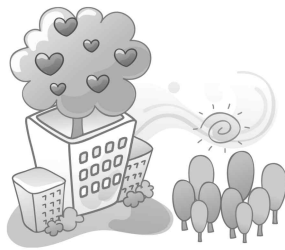


13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총괄표]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 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 기간 (개월)	'13년 정부 투자규모 (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 (백만원)	'13년 신규 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소방 방재청	백두산 화산대응 기술개발사업	지구과학, 정보/통신, 기타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연구개발, 기반구축, 국제협력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9~43	30	700	-	1470
소방 방재청	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기타	기관·단체, 사업자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개발연구	12~24	28	188	1~2월	1476
소방 방재청	인적재난안전기술 개발사업	건설/교통, 정보/통신	대학, 연구소, 기업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응용연구	12~36	27.59	394	-	1483
소방 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건설/교통 전 분야, 지구과학(자연 재해분석/예측) , 환경(토양/지하 수복원/관리)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60	79 (79.17/ 사업운영비 제외-75.3)	4 (4.39/ 사업단 운영비 제외- 4.43)	2월	1491
소방 방재청	지진 및 지진해일 피해저감기술 개발사업	건설/교통 전 분야, 지구과학(지질 과학, 자연재해분석/ 예측)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36	18 (18.29/ 사업단 운영비 제외- 17.29)	2 (2.286/ 사업단 운영비 제외- 2.47)	2월	1500
소방 방재청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사업	기타	기관·단체, 사업자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개발연구	12~24	60	333	1~2월	1509
소방 방재청	특수재난 현장긴급대응기술 개발사업	재난안전장비, 재난정보관리, 기타(구조구급)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60	31	725	1~2월 ('14 년도)	1515
소계	7개 사업									

백두산 화산대응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백동현

(전화 : 02-2100-5163, E-mail : mirthbdh@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지구과학, 정보/통신, 기타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기반구축, 국제협력
(4)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9개월 ~ 43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0 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00 백만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가 화산재해 위험도 평가 및 대응기술 확보

- 화산재해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및 피해저감기술 확보를 통한 인명 및 사회·경제 피해 최소화 및 지속적 국가 경쟁력 확보

사업내용

화산재해 피해예측 기술개발

- 화산재 피해 예측 기술개발
- 화쇄류-화산성 홍수 및 화산이류 피해 예측 기술 개발

- 화산재해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기술 개발
- 화산성 지진으로 인한 국내 피해예측 기술 개발
- 화산재 피해 예방 및 관리기술
 - 화산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관리기술 개발
 - 화산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환경분야 관리기술 개발
 - 화산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보건분야 관리기술 개발
 - 화산재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산업분야 관리기술 개발
 - 낙하 화산재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
- 화산재해 대응시스템 개발
 - 화산재해 피해 예측 기술 통합 및 관리기술 개발
 - 화산재해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 화산재해 대응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 지구과학 분야(화산재, 화산이류, 화산성 지진 등)
- 기반구축
 - 화산재해 대응시스템 구축 및 대응매뉴얼 구축
- 국제협력
 -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위원회 구성

3. 신청자격

신청 대상 및 조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 및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 기관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개 과제 총 연구비 13,550백만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 지원기간 : '12년 ~ '15년

지원조건

- 기업참여시 참여비율
 - ‘참여기업’으로 참여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 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따라 기업부담금 부담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5.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 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	사업단
↓		
전담평가단 평가 (전문가 평가)	◦ 기술분야별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 전담평가단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을 평가위원 선정, 구성	사업단 (평가위원)
↓		
종합평가서 작성 (가감점 부여)	◦ 전문가 평가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가서 작성	사업단 (평가위원)
↓		
지원 대상과제 확정	◦ 사업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		
협약체결	◦ 사업단-주관기관-협동·공동·위탁기관 (각 협약주체간 협약)	사업단
↓		
사업수행 관리	◦ 연 진도보고 2회, 중간평가 1회 ◦ 평가 결과를 재난안전연구원 및 소방 방재청 보고	사업단 (평가위원)
↓		
연차·최종평가	◦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시 연차평가 ◦ 총 연구기간 종료시 최종평가 ◦ 평가 결과를 재난안전연구원 및 소방방재청 보고	사업단 (평가위원)
↓		
사업비 정산	◦ 매년 연차별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에서 사업단으로 보고 후 사업단에서 재난안전연구원으로 보고	사업단
↓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연차보고서/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 연구과제 사후 관리	사업단

6. 추진일정

□ 2013년 추진일정

구분	일자	내용	비고
과제협약	2013. 5. 01[수]	○ 2차년도 과제협약 : 4개 과제 (12개 세부과제)	
화산방재교육	2013. 5. 23[목]	○ 일본 내각부 교육	광운대 주관
연구교류 워크숍	2013. 6. 19[수]	○ 백두산 화산 R&D 연구교류 워크숍	기상청 주관
진도보고회	2013. 7월 중	○ 1회차 진도점검 : 진도보고회	
중간평가	2013. 9월 중	○ 2회차 진도점검 : 중간평가(발표)	
국제학술대회	2013. 10. 23[수]~26[토]	○ 장소 : 제주 / 주관 : 사업단, 광운대학교 공동	
서면평가	2013. 11월 초~말	○ 3회차 진도점검 : 서면평가	
연차평가	2014. 1월 중	○ 2차년도 연차평가	
3차년도 협약 준비	2014. 2월 중	○ 협약 서류 및 협약설명회 안내	
2차년도 과제 종료	2014. 2. 28[금]	○ 백두산 화산대응기술개발사업 2차년도 과제 종료	

7. 제출서류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류

○ 과제별

- 신청공문 1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총괄용) 10부
- 소방방재 R&D 과제별 성과계획 1부

- 기관별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10부
 - 가점부여 증빙서류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업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 선정 이후 사업수행 관리
 - 과제별/기관별 : 진도보고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관련정보
 - 소방방재청 : www.nema.go.kr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www.ndmi.go.kr
 - 백두산 화산대응기술개발사업단 : www.volcano.re.kr

〈문 의 처〉

- 정 부 :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백동현
(Tel : 02-2100-5163, E-mail : mirthbdh@korea.kr)
- 전문기관 : 백두산 화산대응기술개발사업단 류희경
(Tel : 043-249-1758, E-mail : volcano2014@daum.net)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용인

(전화 : 02-2100-5153, E-mail : jyi68kr@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분야
(2) 연구수행주체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24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약 28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약 188백만원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연구기획, 국제공동연구, 산업육성 등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과학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추진과제 :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단 운영
- 중점 추진내용
 - 재난 및 안전 산업체의 공동 수요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 기술이전 등 산업화 지업사원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기술

- 재난·안전분야 연구과제의 발굴 및 로드맵 수립 등 체계적인 연구기획 추진
- 글로벌 재난의 공동대처, 선진 기술의 도입 및 우수기술 이전 등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
- 소방방재분야 산업체의 애로기술 지원
 - 산·학·연 협력을 통해 신기술·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제품 성능 개선 기술
 - 제품의 성능·디자인 및 정보기술 등 향상을 통한 산업현장 적용기술
- 이전기술의 산업화 지원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기관, 대학)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3. 신청자격

□ 신청 대상 및 조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소방방재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방재협회, 기업재해경감협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및 방재산업분야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소방방재청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음.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참여율은 25% 이상 정하여 수행
- 연구기관, 대학 등이 신청기관이 되는 경우, 기업을 협동연구기관으로 필수 참여

□ 기업참여시 참여 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 1] 참조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지원규모/기간
 - 개발기간 3년 이내, 총 연구비 3억원 미만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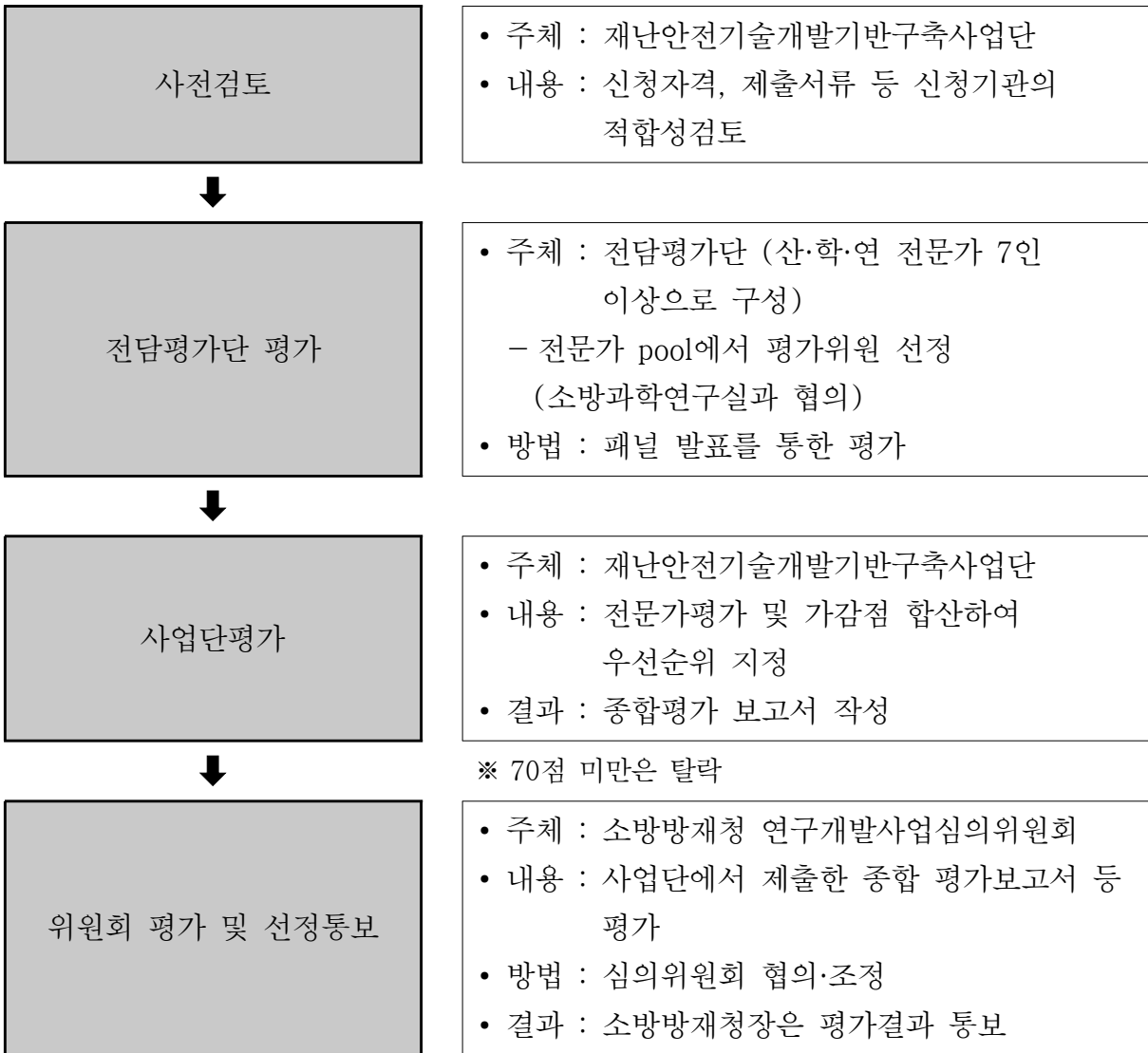
- 선정 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 순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및 사업단의 요구에 의한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평가자와 협약 체결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소방방재청을 주관 부처로 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단을 두어 산·학·연 및 다학제적인 공동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함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사업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13. 1. 29. ~ 2. 27.
- 선정평가(전문가 및 사업단 평가) : 2013. 4월말
- 개별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13. 6월
- 선정과제 연구비 지급 : 2013. 7월

- 중간진도점검보고회 개최 : 2013. 11월 예정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과제신청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가점 부여 증빙서류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재난안전기술(R&D) 과제별 성과계획

산업화지원사업 추가 제출

- 공동연구기관,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산업화 지원사업 이전기술 개요(해당되는 경우)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 기타 관련사항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rdms.nema.go.kr) “자료마당-R&D규정
자료”

— <문 의 처> —

○ 정 부 :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 정용인

(Tel : 02-2100-5153, E-mail : jyi68kr@korea.kr)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 백동현

(Tel : 02-2100-5163, E-mail : mirthbdh@korea.kr)

○ 전문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R&D사업단 나용운, 신영민

(Tel : 031-289-2903, E-mail : zerokira@kfi.or.kr)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용인

(전화 : 02-2100-5153, E-mail : jyi68kr@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건설/교통, 정보/통신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3) 지원목적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4) 연구개발단계	응용단계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7.59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394

1. 사업개요

개요

사업목적

- 국민의 안전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인간의 의도, 부주의, 실수 또는 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발생 가능한 각종 인위적인 재난에 대한 재난예방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사업목표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요 공공시설의 안전을 위해 그간 개발된 핵심 기술들의 체계화·통합화를 통해 안전관리 현장에서 사용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인적재난 대비 및 대응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 대국민 경보 및 대피 기술개발 (16억원)

- 화재방 통합관리 주민보호 시스템 개발
- 피난 안전성 평가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복합건축물 피난 시뮬레이션 국산화
- 지능·맞춤형 통합경보 시스템 연구개발
- 국지적 재난시 피해자 대응, 이송, 처치 시뮬레이션 개발

○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9.9억원)

- (계속) 안전기준 체계화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신규)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에 의한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 도시방재를 위한 지하공동구 이상기류 감지 및 환기제어 시스템 개발

3. 신청자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시 유의사항

- ① 연구책임자는 소방방재청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음.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②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 ③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참여율은 25%이상 정하여 수행

○ 기업참여시 참여 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 1] 참조

※ 해당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기간 : '03년 ~ (계속사업)

○ '13년 사업비 : 2,759백만원(연구비 2,589백만원, 운영비 170백만원)

○ 추진과제 :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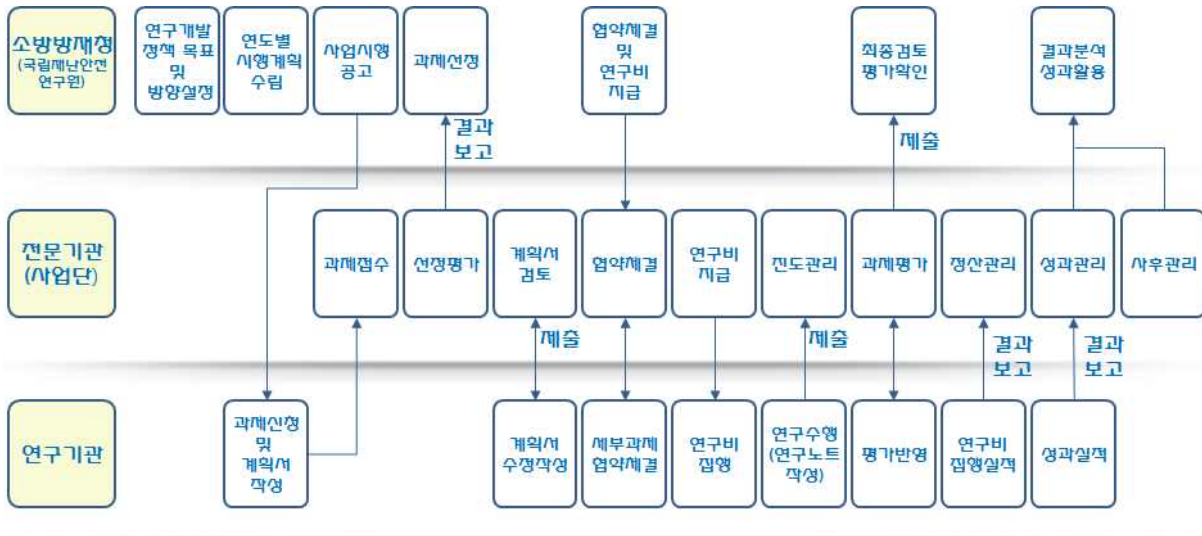
○ 중점 추진내용

- 인적재난 및 각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 마련 및 안전기준·체계 마련 등을 위한 연구개발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소방방재청
 - 사업 관리기관 :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과제 관리기관 :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5.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일자	구 분	내 용
1월	R&D 사업설명회	○ 2013재난안전기술 R&D 사업설명회
4월	선정평가	○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4월	선정평가 결과 송부	○ 선정평가 결과 과제별 송부
4월	2차년도 협약준비	○ 협약 서류 및 협약설명회 안내메일 공지
4월	협약설명회	○ 1년도 협약 제출 서류 및 개정사항 설명
5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과제담당관과 협의 후 확정된 연구내용 제출
5월	협약서류제출	○ 1차년도 협약 서류 제출 및 사업단 검토
5월	과제협약	○ 1차년도 과제협약 : 4개 과제(12개 세부과제)
6월	1차 연구비 지급	○ 사업단 → 4개 주관기관 연구비 지급(연구비의 70%)
6월	착수보고회	○ 4개 과제 2차년도 연구 착수보고회 (소방방재청, 연구원 과제담당관 대상)
6월	진도보고회 준비	○ 중간진도보고서 제출 공지 및 자문위원 섭외
7월	진도보고회	○ 1회차 진도점검 : 진도보고회
9월	중간평가 준비	○ 평가 관련 서류 제출 공지 및 평가위원 섭외
10월	중간평가	○ 2회차 진도점검 : 중간평가(발표)
10월	현장실사[해당시]	○ 중간평가 결과 C등급 이하 기관 현장실사
10월	중간평가 후속조치	○ 중간평가 조치사항 검토회의
11월	2차 연구비 지급	○ 사업단 → 4개 주관기관 연구비 지급(연구비의 30%)
1월	서면평가	○ 3회차 진도점검 : 서면평가
3월	연차평가 준비	○ 평가 관련 서류 제출 공지 및 평가위원 섭외
3월	연차평가	○ 1차년도 연차평가
4월	현장실사[해당시]	○ 연차평가 결과 C등급 이하 기관 현장실사
4월	연차평가 후속조치	○ 연차평가 조치사항 접수
4월	1차년도 과제 종료	○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1차년도 과제 종료

7. 제출서류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 작성 서식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별지 제1-1호 및 제1-2호
-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p8 참조)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업 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재난안전기술(R&D) 과제별 성과계획 1부

8. 관련자료

처리규정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단 운영·관리지침
- 소방방재청 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 소방방재청 연구비 카드제 운영지침(안)
- 소방방재청 연구장비 운영·관리지침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홈페이지
 -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humansafe.re.kr) “정보마당-공개자료실”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rdms.nema.go.kr) “자료마당 - R&D 규정자료”

— <문 의 처> —

- 정 부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팀 정용인
(E-mail : jyi68kr@korea.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 심기오
(E-mail : shimko1@korea.kr)
- 전문기관 : 한양대학교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김도근
(E-mail : man0036@naver.com)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백동현

(전화 : 02-2100-5163, E-mail : mirthbdh@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 건설/교통 전분야 · 지구과학(자연재해분석/예측) · 환경(토양/지하수복원/관리)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9억(79.17 / 사업단 운영비 제외-75.3)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억(4.399) / 사업단 운영비 제외-4.43)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적 원인조사 및 실질적 피해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목표

- 자연재해저감기술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 보장 및 高 부가가치 방재산업 육성에 기여

중점 추진내용

- 최근 온난화 및 이상기후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를 대비한 자연재난 환경변화 예측 및 방재기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개발

2.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

○ 과학기술분야

- 자연재해 전반 예측/분석 기술

산업기술개발

- 자연재해 대비 실시간 예측·경보·대피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소방방재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방재협회, 기업재해경감협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및 방재산업분야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규모

- 7,917백만원(연구비 7,530백만원, 운영비 387백만원)

선정방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 한해 과제별 지정공모
-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사업단 평가) → 선정(1년마다 진도점검 3회 실시)

지원방식

- 정부 출연금

사업내용

- 총사업비의 100% R&D

지원조건

- 기업참여시 사업비 대비 비율별 민간부담금 기업체가 부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 1] 참조

→ 해당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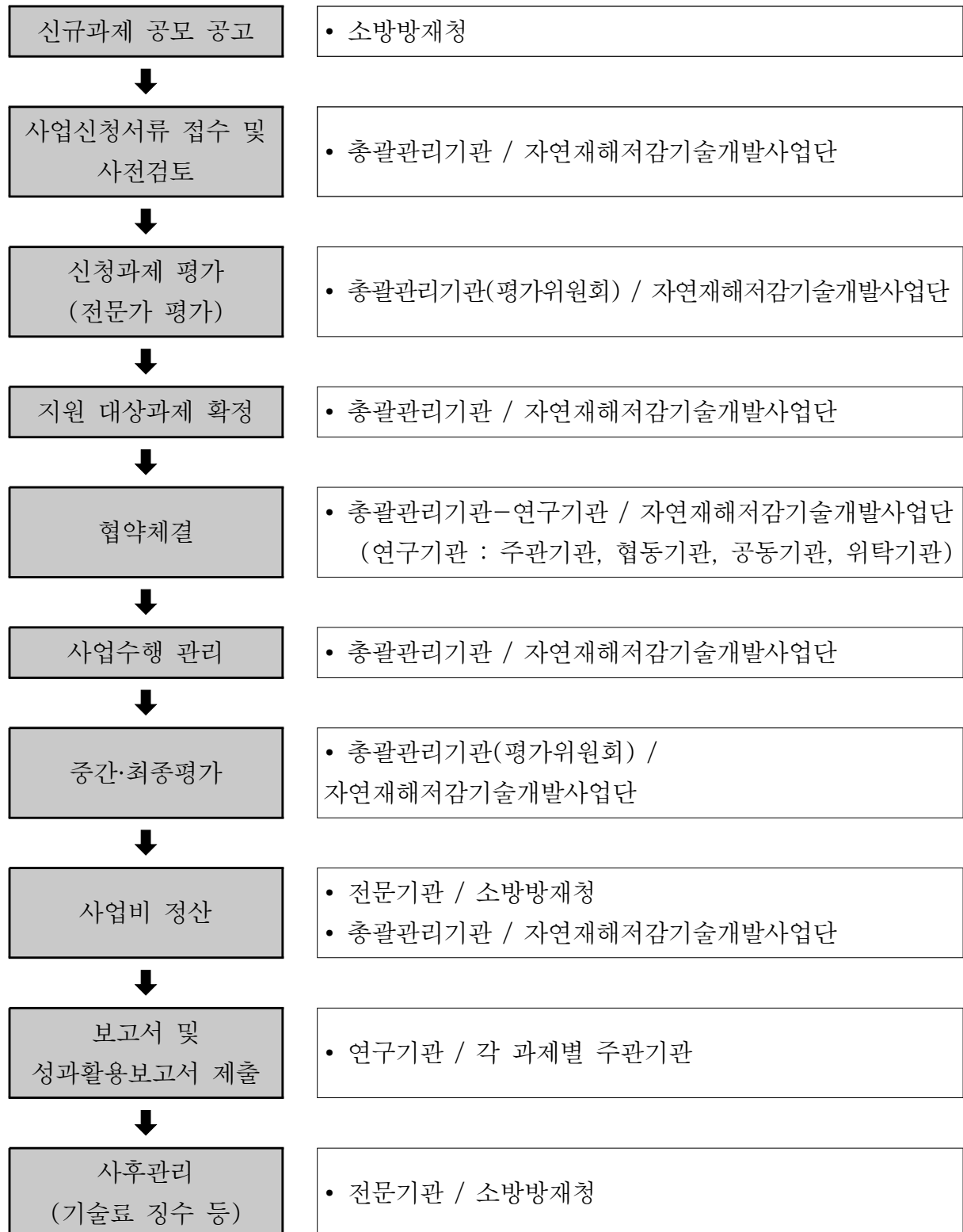
○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소방방재청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음.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참여율은 25%이상 정하여 수행

○ 평가방법 : 전문가 평가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전문가평가 점수 및 순위를 결정하는 상대평가
- 전문가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단, 전문가평가 점수가 C등급(60~69점) 이하인 경우 탈락

5. 추진체계 및 절차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월	추진계획	추진내용	대상
1	■ 수요조사 RFP 제출	■ 신규과제 발굴 수요조사 (방재관련 전문가 대상 신규과제 수요조사 실시)	방재전문가
2	■ 신규과제 공모	■ 신규과제 신청 접수	신규3과제
3	■ 신규과제 선정평가	■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 ■ 전문평가단 구성 및 전문가 평가 실시	신규3과제
	■ 계속과제 연차평가	■ 계속과제 연구내용 및 성과 평가	계속9과제
4	■ 계속과제 협약체결	■ 협약서, 연차실적계획서, 연차보고서 접수(협약가이드 제공)	계속9과제
	■ 사업비 정산	■ 연구비 사용내역 정산 및 자료 제출	계속9과제 종료1과제
5	■ 신규과제, 계속과제 협약체결	■ 협약서, 연차실적계획서, 연차보고서 접수 (협약가이드 제공) * 신규1과제는 재공모를 통해 7월 협약 예정	신규3과제 계속5과제
	■ 종료과제 최종평가	■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종료6과제
	■ 사업비 정산	■ 연구비 사용내역 정산 및 자료 제출	계속5과제 종료6과제
	■ 사업비 지급	■ 당해연도 연구비 지급	신규2과제 계속14과제
9	■ 신규과제, 계속과제 중간평가	■ 중간진도점검(사업단 평가) ■ 연차별 1회 실시	신규3과제 계속9과제
10	■ 계속과제 중간평가	■ 중간진도점검(사업단 평가) ■ 연차별 1회 실시	계속5과제
12	■ 차년도 추진계획 수립 (로드맵)	■ 차년도 과제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 사업단 운영전략 수립	사업단 (총괄관리 기관)

7. 제출서류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작성 서식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p8 참조)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업 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재난안전기술(R&D) 과제별 성과계획 1부

○ 선정이후

- 연차실적계획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 기관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구조·경영실태, 기업부설연구소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선정 이후

	제출서류	대상기관			
		주관	협동	위탁	참여기업
1	제출공문	○			
2	협약서	○	○	○	○
3	연구 개발과제 계획서	○	○	○	○
	연차 실적·계획서	○	○	○	○
4	소방방재청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			
5	법인등기부등본	○	○	○	○
6	사업자등록증	○	○	○	○
7	사용인감계	○	○	○	○
8	인감증명서	○	○	○	○
9	참여연구원 재직(학) 증명서	○	○	○	○
10	참여연구원 확인서	○	○	○	○
11	위임장	○	○	○	○
12	보안서약서	○	○	○	○
13	과제 참여 확인서	○	○	○	○
14	참여기업 계약서	○	○	○	○
15	기업부담금 협약서	○	○	○	○
16	부담금 납입확인서류	○	○	○	○
17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
18	개인별 과제참여율 조사표	○	○	○	○
19	통장사본	○			
20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	○	○
21	참여기업 포기 협약서	○	○	○	○
22	성과계획서	○	○	○	○
23	위촉연구원 확인서	○	○	○	○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rdms.nema.go.kr) “자료마당 → R&D 규정자료”

□ 기타서류

- 공고문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rdms.nema.go.kr) “자료마당 - R&D 규정자료”
- 신청서류
 -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http://www.nhmrg.re.kr>)-자료실-규정 및 지침
 -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http://www.nhmrg.re.kr>)-자료실-과제선정

〈문의처〉

- 정 부 :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백동현
(Tel : 02-2100-5163, E-mail : mirthbdh@korea.kr)
- 전문기관 :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 김제형 사무국장
(Tel : 02-3453-3041, E-mail : nhmrg03@daum.net)

지진및지진해일피해저감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백동현

(전화 : 02-2100-5163, E-mail : mirthbdh@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 건설/교통 전분야 · 지구과학(지질과학, 자연재해분석/예측)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8억(18.29 / 사업단 운영비 제외-17.29)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억(2.286) / 사업단 운영비 제외-2.47)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서의 대규모 지진 및 지진해일 위험성 증가에 따른 과학기반의 선제적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기술 개발

사업목표

-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기술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 증대

중점 추진내용

- 지진해일 피해저감을 위한 구조물 등 라이프라인 보호기술 및 지진피해 예측 및 지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

○ 과학기술분야

- (자연재해 전반 예측/분석 기술 관련)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기술

산업기술개발

- 자연재해 대비 지진 및 지진해일 실시간 예측·경보·대피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 및 시행령 제79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44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소방방재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방재협회, 기업재해경감협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및 방재산업분야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829백만원(연구비 1,729백만원, 운영비 100백만원)

○ 선정방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 및 시행령 제79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44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 한해 과제별 지정공모
-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사업단 평가) → 선정(1년마다 진도점검 3회 실시)

○ 지원방식

- 정부 출연금

○ 사업내용

- 총사업비의 100% R&D

□ 지원조건

○ 기업참여시 사업비 대비 비율별 민간부담금 기업체가 부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 1] 참조

→ 해당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소방방재청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음.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참여율은 25%이상 정하여 수행

○ 평가방법 : 전문가 평가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전문가평가 점수 및 순위를 결정하는 상대평가

→ 전문가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단, 전문가평가 점수가 C등급(60~69점) 이하인 경우 탈락

5. 추진체계 및 절차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월	추진계획	추진내용	대상
1	■ 수요조사 RFP 제출	■ 신규과제 발굴 수요조사 (방재관련 전문가 대상 신규과제 수요조사 실시)	방재전문가
2	■ 신규과제 공모	■ 신규과제 신청 접수	신규2과제
3	■ 신규과제 선정평가	■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 ■ 전문평가단 구성 및 전문가 평가 실시	신규2과제
	■ 계속과제 연차평가	■ 계속과제 연구내용 및 성과 평가	계속5과제
4	■ 계속과제 협약체결	■ 협약서, 연차실적계획서, 연차보고서 접수 (협약가이드 제공)	계속5과제
	■ 종료과제 최종평가	■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종료2과제
	■ 사업비 정산	■ 연구비 사용내역 정산 및 자료 제출	계속5과제 종료2과제
5	■ 신규과제 협약체결	■ 협약서, 연차실적계획서, 연차보고서 접수 (협약가이드 제공)	신규2과제
	■ 사업비 지급	■ 당해연도 연구비 지급	신규2과제 계속5과제
9	■ 신규과제, 계속과제 중간평가	■ 중간진도점검(사업단 평가) ■ 연차별 1회 실시	신규2과제 계속5과제
12	■ 차년도 추진계획 수립 (로드맵)	■ 차년도 과제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 사업단 운영전략 수립	사업단 (총괄관리 기관)

7. 제출서류

□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작성 서식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시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p8 참조)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업 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재난안전기술(R&D) 과제별 성과계획 1부

○ 선정이후

- 연차실적계획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 기관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구조·경영실태, 기업부설연구소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선정 이후

	제출서류	대상기관			
		주관	협동	위탁	참여기업
1	제출공문	○			
2	협약서	○	○	○	○
3	연구 개발과제 계획서	○	○	○	○
	연차 실적·계획서	○	○	○	○
4	소방방재청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			
5	법인등기부등본	○	○	○	○
6	사업자등록증	○	○	○	○
7	사용인감계	○	○	○	○
8	인감증명서	○	○	○	○
9	참여연구원 재직(학) 증명서	○	○	○	○
10	참여연구원 확인서	○	○	○	○
11	위임장	○	○	○	○
12	보안서약서	○	○	○	○
13	과제 참여 확인서	○	○	○	○
14	참여기업 계약서	○	○	○	○
15	기업부담금 확약서	○	○	○	○
16	부담금 납입확인서류	○	○	○	○
17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
18	개인별 과제참여율 조사표	○	○	○	○
19	통장사본	○			
20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	○	○	○
21	참여기업 포기 확약서	○	○	○	○
22	성과계획서	○	○	○	○
23	위촉연구원 확인서	○	○	○	○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지진재해대책법」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rdms.nema.go.kr) “자료마당 → R&D 규정자료”

기타서류

- 공고문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rdms.nema.go.kr) “자료마당 - R&D 규정자료”
- 신청서류
 - 지진및지진해일피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http://www.nhmrg.re.kr/>)-자료실-규정 및 지침
 - 지진및지진해일피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http://www.nhmrg.re.kr/>)-자료실-과제 선정

〈문 의 처〉

- 정 부 :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백동현
(Tel : 02-2100-5163, E-mail : mirthbdh@korea.kr)
- 전문기관 : 지진및지진해일피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 김제형 사무국장
(Tel : 02-3453-3042, E-mail : ethmrg@daum.net)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용인

(전화 : 02-2100-5153/E-Mail : jyi68kr@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
(2) 연구수행주체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24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약 6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약 333백만원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요 공공시설의 안전을 위해 그간 개발된 핵심기술들의 체계화·통합화를 통해 안전관리 현장에서 사용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인적재난 대비 및 대응기술 개발

사업 개요

- 추진과제 :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단 운영
- 중점 추진내용
 - 첨단기술 기반 화재 진압·예방을 위한 소방기술 개발 및 소방산업 및 인력육성 등 각종 지원기술 개발을 통한 소방 인프라 구축

2. 지원대상분야

산업기술개발

- 효율적인 소방·방재 활동을 위하여 신기술 및 시스템 개발 사업

3. 신청자격

신청 대상 및 조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신청시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소방방재청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음.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참여율은 25%이상 정하여 수행

기업참여시 참여 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1] 참조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연구비 : 60억(각 과제별 지원 연구비는 과제별 RFP 참고)
- 연구 기간 : 2년('13~'14)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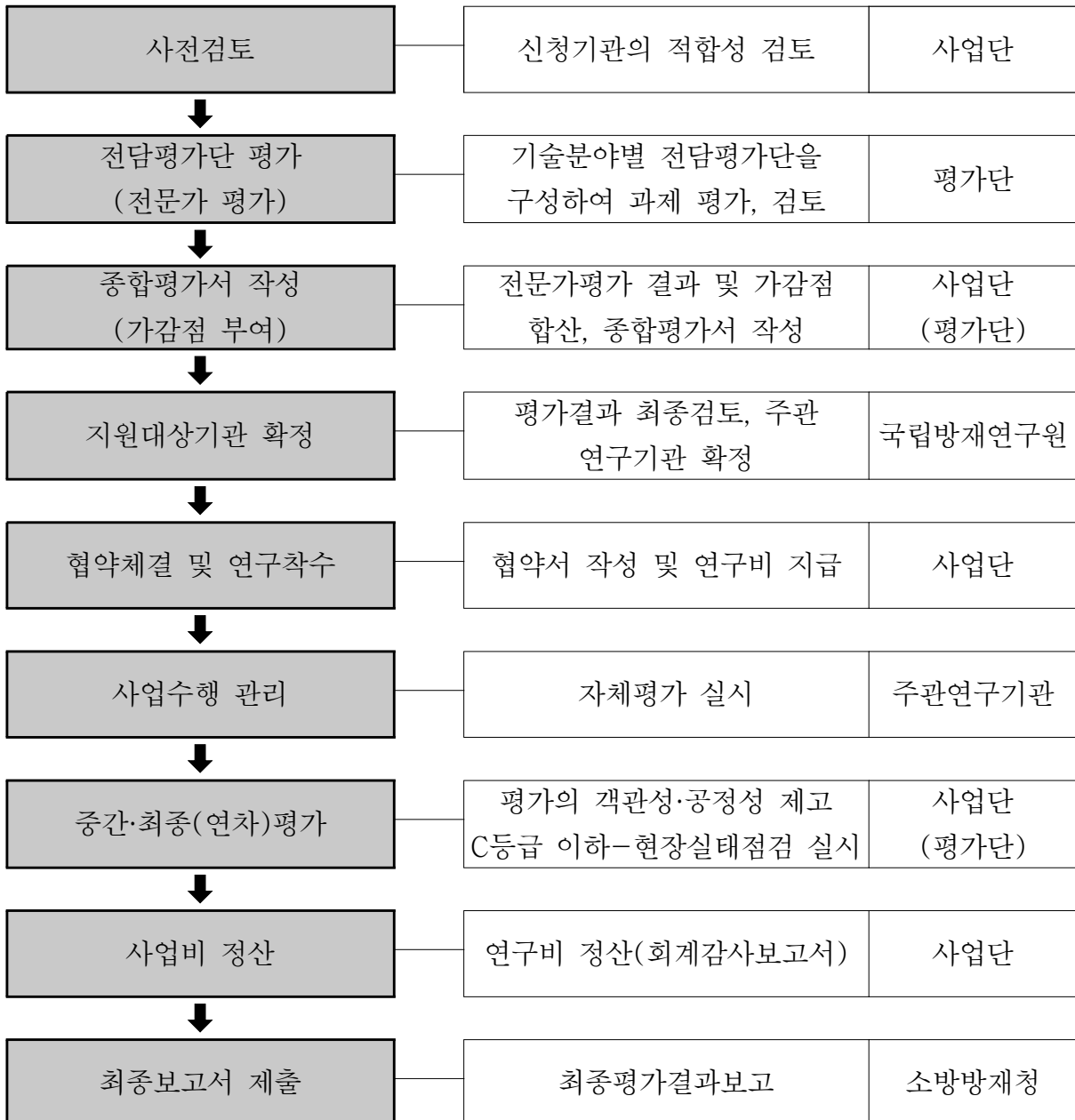
- 선정 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 및 사업단의 요구에 의한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평가자와 협약 체결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소방방재청을 주관 부처로 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차세대 핵심소방안전 기술개발사업단을 두어 산·학·연 및 다학제적인 공동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함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사업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13. 1. 29. ~ 2. 27.
- 선정평가(전문가 및 사업단 평가) : 2013. 4월말
- 개별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13. 6월
- 선정과제 연구비 지급 : 2013. 7월
- 중간진도점검보고회 개최 : 2013. 11월 예정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과제신청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 가점 부여 증빙서류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재난안전기술(R&D) 과제별 성과계획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단 운영관리지침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등

기타 관련사항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rdms.nema.go.kr) “자료마당-R&D규정자료”

〈문 의 처〉

- 정 부 :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김홍식 연구관
(Tel : 041-559-0543, E-mail : yurimgas@korea.kr)
- 전문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R&D사업단 임옥근, 임유리
(Tel : 031-289-2901, E-mail : terence@kfi.or.kr)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용인

(전화 : 02-2100-5153, E-mail : jyi68kr@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재난안전장비, 재난정보관리, 기타(구조구급)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1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725백만원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특수 재난현장의 극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호·대응 장비 및 긴급대응기술개발

사업 목표

- 특수재난의 효율적 대응기술 축적화로 재난안전사회 구현
- 소방대원의 현장대응기술 선진화를 통한 현장 활동 안전성 확보
- 능동적 구조구급기술 개선을 통한 인명피해 저감

□ 사업 추진방향

- 극한 재난환경에서 대응의 신속성, 예측력, 정확성 등을 높이고, 재난현장에서 불필요한 대응력을 줄여 보다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
- 특수재난현장의 극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보호·대응 장비 및 긴급대응기술 개발로 우리나라 대응역량의 선진화 진입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저감을 위한 소방의 전문성 확보 및 기반구축과 대응체계 개선
- 각종 특수 장비 개발, 재난통제, 체계화를 통한 특수재난 대응분야의 소방인프라 구축·육성 및 국가 경쟁력 향상

2. 지원대상분야

□ 특수재난 진압 장비 기술

- 특수재난 요인(CBRN 및 유해물질)별 요인제거/소방 장비 개발 기술
- 특수재난 발생장소별 소방장비 개발 기술
- 극한환경 극복 로봇기술 및 성능검정 시스템 개발 기술
- 특수재난 진압용 원격제어장비 개발 기술
- 특수재난 진압용 약제 개발 기술

□ 특수재난 진압 방안(기법) 기술

- 특수재난 요인(CBRN 및 유해물질)별 진압기법 개발 기술
- 특수재난 발생장소별 진압기법 개발 기술
- 특수재난 현장 구조/구급 작전 개발 기술

- 특수재난 진압/구조/구급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기술
- 특수재난 진압 지휘통제 기술
 - 특수재난 진압 통합현장관리시스템 구축 기술
 - 특수재난 진압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기술
 - 극한환경 극복 통신시스템 구축 기술
- 특수재난 현장요원 안전확보 기술
 - 극한환경 대응 유비쿼터스 개인 장구 개발 기술
 - 극한환경 대응 구조/구급대원의 활동/보호 장비 개발 기술
 - 극한환경 현장요원 안전 활동 매뉴얼 개발 기술
 - 특수재난 소방관의 육체적, 정신적 지원기술 개발 기술
- 특수재난 인명 구조/구급 기술
 - 극한환경 인명구조장비 개발 기술
 - 극한환경 구조/구급장비 개발 기술
 - 극한환경 인명 구조/구급용 로봇 및 성능검정 시스템 개발 기술

3. 신청자격

- 신청 대상 및 조건(공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290억원 ('12년~'16년 : 20억원, 31억원, 63억원, 87억원, 89억원)

선정방식 : 재난/안전관련 산·학·연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공모

- 사업계획서 제출 ⇒ 평가(서면, 패널) ⇒ 선정(전문평가단)

지원기간

- 2012년~2016년(총 5년간) 사업기간 내에서 과제별 차등 지원

지원조건

기업참여시 참여 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1] 참조하여 민간부담금 부담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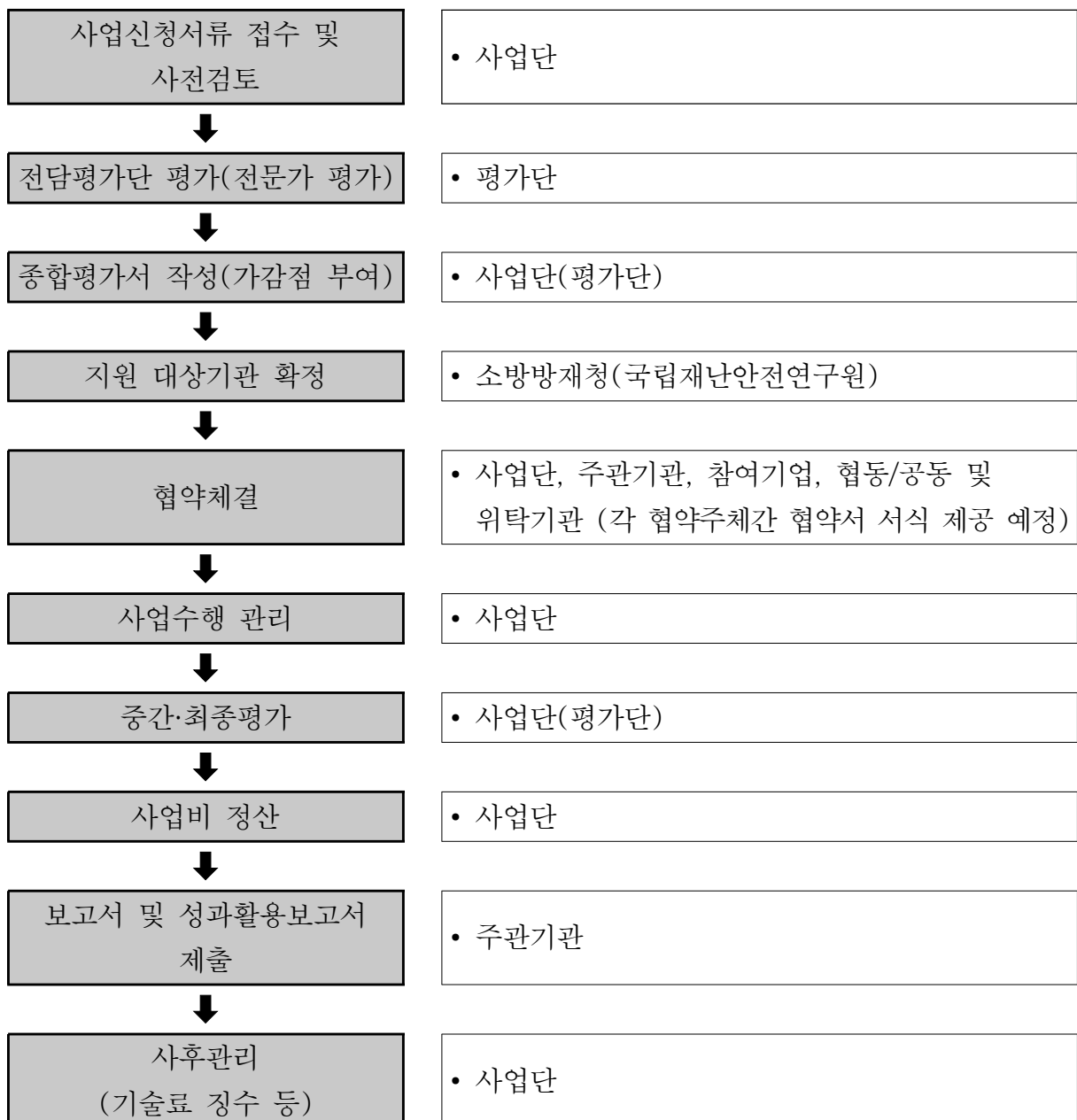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참여율은 25%이상 정하여 수행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소방방재청 : 기본방향 설정, 예산 확보/지원, 평가기본계획 수립
- 사업단 : 과제 평가 및 성과관리 수행(사업비 집행관리, DB구축/관리)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월별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월별 End-Product
6	▪ '13년 계속과제 협약체결	▪ 계속 4개
7	▪ 출연금 지급	▪ 계속 4개
8	▪ '12년 과제 사업비 정산	
12	▪ '13년 계속과제 중간평가 실시	▪ 계속 4개
1	▪ 현장평가 실시 (C등급 과제)	
1~2	▪ '14년 신규과제 선정평가 공고 및 실시	
3	▪ '14년 신규과제 협약체결	
5	▪ '13년 계속과제 연차평가 실시	▪ 계속 4개

7. 제출서류

신규과제 신청 시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p.8)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재난안전기술(R&D) 과제별 성과계획 1부

계속과제 협약 시

- 연차실적계획서 10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8-1호 및 제8-2호 서식
- 연차보고서 10부
- 자체평가의견서
- 당해연도 연구실적
-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3-2호 서식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1조(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소방기본법 제39조의 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기타서류

- 관련 양식 : 사업단 홈페이지 (<http://special.kiu.ac.k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ndmi.go.kr>)

—〈문 의 처〉—

- 정 부 :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김홍식 연구관
(Tel : 041-559-0543, E-mail : yurimgas@korea.kr)
- 전문기관 : 경일대학교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단 최재형
(Tel : 053-600-4501, E-mail : merini@hanmail.net)